

제 29 조 (학점교류 및 인정) ① 국내·외 타 대학원(교내 대학원 제외) 동일(유사)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별 3학점 이내, 총 9학점까지 제한하며 전공으로 인정한다. 다만,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의 이수기준을 적용한다. <개정 2009.01.02, 2009.11.11, 2012.02.07., 2013.03.01>

② 교내 타 대학원(또는 타 학과)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되, 수강신청 기간에 지도교수,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, 재학기간 총 수료학점의 1/2 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한다. 다만,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, 교육대학원은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교과목중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<신설 2009.11.11, 개정 2012.02.07., 2014.11.18>